

2024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□ 2024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규모 : 20억원

□ 용자대상

○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(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업체에 한함)

※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**담보제공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가능자**에 한하며,

(신용보증서의 경우) 1년 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/ 세금채납, 연체이력 등 보유 / 저신용점수(평가등급)의 경우 용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※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용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될 수 있음

※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용자금 조정 및 용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용자조건

○ 용자금액 : 최고 1억원 (단, 제조업체는 2억원)

▪ 신청가능금액 : 전년도 매출액의 1/2 한도 내

▪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다수인 경우, 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”에 기재된 업태 기준.

○ 용자규모(대출금리) : 20억원 (연 1.5% 고정금리)

○ 용자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자금

○ 상환기간 : 5년

○ 상환방식 :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
□ 대출제한

- 금융보험업, 부동산업, 보건업, 귀금속·주점·골프장·무도장·사치투기성업 등 불임 지원제외업종

[중기부고시 제2021-39호,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(용자대상) ②제외대상에 따름]

-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
- 신청일 현재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
- 국세·지방세 체납, 연체이력 보유, 담보 미제공 업체 등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**2024. 4. 8.(월) ~ 4. 17.(수) 09:00 ~ 18:00**

※ 선착순 대출이며, 신청시작일에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.

- 신청방법 (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상이) : **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신청원칙**

- **부동산** 담보제공 선택 업체 : 방문신청 (중구청 본관4층 도심산업과)
- **보증서** 담보제공 선택 업체

①.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사전 상담 예약 후 재단 방문

- 전화번호 : 02-2174-4406,4408 / 주소 :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, 3층
- **상담기간 : 2024. 4. 3.(수) ~ 4. 17.(수)**
- 예약 시 ‘중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’ 입을 고지

②.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발급한 “보증한도 발급확인서” 지참 후

신청기간 내 중구청 본관4층 도심산업과 방문 신청

(“보증한도 발급확인서” 미지참 시 구청 접수 불가)

- 제출서류

▪ 기본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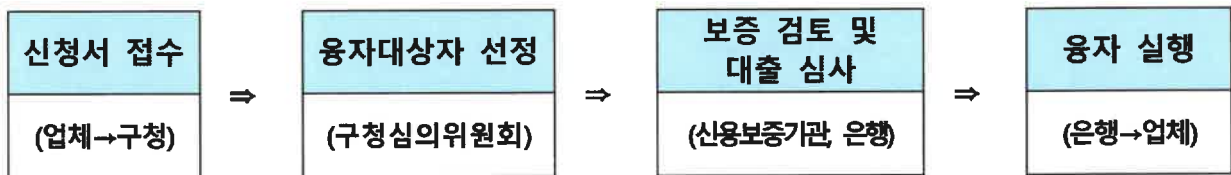
-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서약서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(법인일 경우)법인등기부등본 1부
-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(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)등기부등본 1부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1 ~ 2023년) 1부
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“보증한도 발급확인서” 1부(보증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)
- 부동산 등기부등본(부동산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) 1부

※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서약서 양식은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▪ 추가제출서류 (해당업체에 한함)

- 주민등록초본(대표자 또는 직원) → 중구민인 경우(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)
- 세목별 과세증명서(신청일로부터 1년) → 구세(재산세, 등록면허세) 납부기업에 한함
-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등 직원 채용증빙서류 → 3년 이내 직원 채용실적이 있는 업체
-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→ 보유자에 한함
- 장애인기업 확인서 및 여성기업 확인서(중소부장관 발행) → 보유자에 한함
-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(직원접수시)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가족포함 제3자 접수시)

□ 지원절차



□ 유의사항

-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 조치
 - 용자 실행 후 적정 사용 여부 점검할 수 있음
- 휴업, 폐업, 타 시도로 이전 시에는 반드시 중구청 및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함
- 금융권 기대출자의 경우 용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※ 문의 :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(☎ 02-3396 - 5593)

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<p>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</p> <p>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</p>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<p>보건업</p> <p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</p> <p>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</p> <p>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</p>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<p>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/p> <p>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<p>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</p>